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단53229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수(소송구조)

2. D

3. E

4. F

5. G

6. H

7. I

변론 종결2020. 7. 23.

판결 선고2020. 9.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는 연대하여 568,194,530원을,

나. 피고 C, D, E와 연대하여 소외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피고 F은 154,962,144원을, 피고 G, H, I은 각 103,308,096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소외 K, 피고 D는 1996. 11. 19.경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학원 내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1997. 3. 27.경 임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들은 1997. 4. 1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L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688,000,000원, 보험기간 1997. 1. 3.부터 1999. 3. 3.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 C, 위 K, 피고 D는 자신들이 피보험자에 대한 임차료 지급채무를 연체하여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O, 피고 E, 소외 P, J은 이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L 주식회사는 1998. 4. 6.경 피고 C, 위 K, 피고 D의 임차료 지급 연체를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9. 2. 23. L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535,788,482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 위 K, 피고 D, 위 주식회사 O, 피고 E, 위 P, J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단93755호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1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때 위 소송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도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1999. 11.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788,482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1999. 3. 25.까지는 연 14%, 1999.

3.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1차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 C, 위 K, 피고 D, 위 주식회사 O, 피고 E, 위 P,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4455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2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0. 4.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332,021원을 지급하라."라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위 571,332,021원은 위 지급보험금 원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급보험금 원금을 변제한 2006. 4. 2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미변제된 금액이었다.

마. 위 J은 2014. 6.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D, H, I이 있는데, 이들은 대전자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605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바. 원고는 2차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11. 20.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지연손해금 중 미변제된 금액은 568,194,530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D, E, F, G, H, I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4,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도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 D, E는 연대하여 568,194,5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 D의 경우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J의 사망 전부터 이미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J의 채무에 대한

상속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미변제된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C, D, E와 연대하여 위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 중, 피고 F은 154,962,144원(= 568,194,530원 $\times$ 3/11, 원 미만 버림), 피고 G, H, I은 각 103,308,096원(= 568,194,530원 $\times$ 2/11, 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차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1997. 6. 9. 작성된 서울지방법원 97자1217 건물명도등 사건의 화해조서가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전소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고(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1차 소송의 확정판결과 2차 소송의 확정판결 역시 모두 무효이므로 기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1차 소송의 확정판결과 2차 소송의 확정판결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민